

검 토 보 고

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

- 동 승인안은 1998년 12월 17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- '95년도 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('99~2002)을 수립하여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. 목표설정의 기본방향

-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므로써 서비스의 질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보건조직의 활성화에 이바지

2. 지역의 현황과 변화추이 진단

- 2002년까지의 인구추계와 연도별 의료시설, 보건진료사업, 전염병발생상황 등을 진단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

3. 제2기('99~2002)사업계획 수립

가. 생의주기별 보건사업추진

- 영유아 - 학생 - 성인 - 모성 - 노인등 5단계별

나. 서비스별 보건사업 추진

-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, 영양개선사업
- 구강보건 및 급만성전염병관리, 의·약물관리
- 정신보건 및 재활보건,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
- 방문보건사업, 각종실험 및 검사등

다.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

- 조직 및 인력
- 시설 및 장비

라.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

마.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

□ 검토의견

- 동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부터 20002년까지의 우리시 중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승인안임.
- 계획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은 지역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

○ 다만 인력계획에 있어 '98. 7. 1일 현재 80명의 정원을 2002년
까지 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
이미 '98. 10. 9일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건소의 정원이
63명으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향후 2단계 구조조정이 곧 시작될
것을 감안할 때 2002년까지 63명의 정원을 유지하기는
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.